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8. 5. 22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5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19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(2008. 5. 21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고광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“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”의 명칭이 “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 센터”로 확정됨에 따라 제명 등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“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”를 “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”로 변경(제명, 안 제1조 내지 안 제12조)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(안 제1조, 안 제3조)
-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중 “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”을 “창업 2년 이내

의 중소·벤처기업”으로 입주자격 변경(안 제4조)

-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공동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, 입주자 이외의 자에게는 사용료부과 근거를 마련(안 제7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김 병 욱)

-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창업1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창업2년 이내의 중소·벤처기업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시설·장비 사용료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.
-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효율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.

4. 審査結課：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‘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’의 명칭이 ‘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 센터’로 확정됨에 따라 제명 등을 개정하며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’를 ‘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’로 변경 (제명, 안 제1조 ~ 제12조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(안 제1조, 제3조)
- 다.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중 ‘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’을 ‘창업 2년 이내의 중소·벤처기업’으로 입주자격 변경(안 제4조)
- 라.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공동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, 입주자 이외의 자에게는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

제144조 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(2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
제47조 (업무기준의 고시)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

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
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

(2) 입법예고(2008. 3. 10 ~ 2008. 4. 1)결과 “의견 없음”

(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35조”를 “제144조”로 하고, “영등포구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”를 “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(이하 “창업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 중 “창업보육센터”를 “창업지원센터”로, “제30조의 규정에서”를 “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입주대상 등) ① 구청장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·벤처기업을 설립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중소·벤처기업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업무 총괄 및 창업지원센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일반 신문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창업보육센터”를 “창업지원센터”로, “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”를 “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“창업보육센터”를 “창업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7조 중 제목 “(입주자의 부담금)”을 “(부담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공요금, 공동장비 사용료, 시설 사용료”를 “공공요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“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

제9조제1항 중 “창업보육센터”를 각각 “창업지원센터”로, “중소기업”을 “입주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창업보육센터”를 각각 “창업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,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, 제1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5항, 제11조, 제12조 중 “창업보육센터”를 각각 “창업지원센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시설·장비 사용료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	단위	사용료 (기준액)	비 고
시 설 명				
기 본 시 설	회의실	1시간	20,000원	1. 시설사용은 근무일 09:00 - 18: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2.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 3. 부속설비 1회의 기준은 4시간 이내로 한다.
	세미나실	1시간	10,000원	
	투자상담실	1시간	5,000원	
부 속 설 비	조명	1회	10,000원	
	음향	1회	10,000원	

신·구조문 대조표(안)

현 행	개 정 안
<p><제 명>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벤처 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)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(이하 “창업보육센터” 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창업보육센터의 운영, 입주 승인, 창업보육센터 입주자(이하 “입주자” 라 한다)의 지원, 졸업, 퇴거 및 사후 관리에 관하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0조의 규정 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4조(입주대상 등) ①구청장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 신청일</p>	<p><제 명>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 제144조-----영등포구 중소 기업 창업지원센터 ----- -----</p> 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 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(이하 “창 업지원센터” 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창업지원센터----- ----- 창업지원센터 ----- ----- -----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----- -----</p> <p>제4조(입주대상 등) ①구청장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 신청일</p>

현행	개정안
<p>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시킬수 있다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</p> <p>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 . 운영) ①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-----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 2 ~ 4 (생략) 5. (생략).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7조(입주자의 부담금)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, 임대료, 공공요금, 공동장비 사용료,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담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.</p>	<p>현재 중소·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중소·벤처기업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 시킬수 있다</p> <p>② (창업보육센터 명칭변경)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 . 운영) ① 창업지원센터-----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-----</p> <p>⑤ ----- ----- .</p> <p>1.(창업보육센터 명칭변경) 2 ~ 4 (현행과 같음) 5. (창업보육센터 명칭변경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부담금) ① ----- ----- 공공요금 ----- -----</p> <p>②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운영의 위탁) ①구청장은 <u>창업보육센터</u>의 효율적 운영과 <u>중소기업</u>의 기술개발, 정보 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----- <u>창업지원센터</u> ----- <u>입주기업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<u>창업보육센터 명칭변경</u>)</p> <p>③ (<u>창업보육센터 명칭변경</u>)</p>